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17일, 김종양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7. 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 7. 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7.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종양 의원)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각종 재난·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나,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의 감면 규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의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나아정 전문위원)

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 제한의 요건 완화 등

개정안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 제한 및 대피의 요건을 매우 긴급한 경우에서 긴급한 경우로 완화하고,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개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신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구체적인 조치로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5조제1항제2호는 현행법의 억류와 피난을 이동 제한과 대피로 개정했는데, 현행법에 규정된 억류와 피난의 의미와 개정안에 규정된 이동 제한과 대피는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개정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요건을 매우 긴급에서 긴급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매우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한 경우에도 이동 제한과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긴급”이 아닌 “매우 긴급”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례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2호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운 점¹⁾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 제5조제1항제3호는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장소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사람에 대한 퇴거와 접근 금지는 해당 사람의 헌법 제10조²⁾에 따라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 제5조제1항제2호와 관련해서는 긴급성을 엄격히 해석하는 판례의 경향상 긴급성에 더해 “매우”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인 구조·구호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그리고 개정안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해서는 위해 야기자에게 위해 방지·제거 책임 등을 부과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위해 야기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1) 출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를 통한 검색 결과

2) 유사한 사례로,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선고한 2009헌마406 결정에서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심판의 대상인 2009년 6월 3일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함.

나.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의 감면 근거 마련

개정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개정안 제11조의5의 내용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 번째는 현행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여 긴급한 상황의 발생 원인을 제1호·제2호에서 규정한 범죄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면 대상의 문언 측면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는 민사책임을 감면을 추가한 것임.

첫 번째로 개정안은 긴급한 상황의 발생 원인을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 발생이 명백한 모든 경우에는 책임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I[정치·행정 분야]」³⁾에서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3) 국회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I[정치·행정 분야]」 453면~455면, 2024

위해 발생의 우려가 특정범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에도 현행법에서는 살인 등 특정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만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함. 동 자료는 향후 과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에 명시된 형사책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직무수행의 범위에 특수공무방해죄 등을 추가하거나, 형 감면 대상 범죄 유형을 삭제하는 개정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국민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면책은 현행 「형법」 4)의 틀 내에서 엄격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의견을 감안하여 2022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서 현행 법률과 같이 면책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생명·신체에 아주 중대한 위해를 제기하는 범죄로만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4)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5)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의 대상이 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1년 11월 29일)의 결안은 아래와 같이 면책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전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114332)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면책이 되는 범죄를 각 호로 제한한 것에 대해 경찰청장은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초로 제기됐던 여러 위원님 지적이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또는 집회·시위 등 일반 행정법령 집행과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되면 경찰권 남용 또는 과잉행사를 부추기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여러 우려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폭력이 수반되는, 폭력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생명·신체에 아주 중대한 위해를 제기하는 그런 범죄로만 축소를 해서 하는 안을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라고 발언함. [제21대국회 제392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2022. 1. 10.) 회의록 58면]

두 번째로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형’에서 ‘형사책임’으로 개정하고 있음. 형사 책임과 관련된 입법례를 살펴보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⁶⁾와 개정안과 같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⁷⁾가 모두 있음.

참고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 11월 29일 의결한 대안에서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⁹⁾ 과정에서 현행법과 같은 형태로 수정됨.

세 번째로 개정안은 책임의 감면 대상에 민사책임을 추가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당하는 위험을 줄이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직무행위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狀)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참고로, 「형법」 제2장제1절의 제목은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임.

7)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8)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전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1년 11월 29일)에서 의결된 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332)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급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332)은 2021년 11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1년 12월 8일 상정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동 규정은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어 경찰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전체회의에 계류되었으며, 2022년 1월 10일 수정의견이 제출되어 의결됨.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입법례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 등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있음.¹⁰⁾

다만,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에서는 근무중인 응급의료사 및 소방관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근거는 있지만 민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¹⁾

현행 법률에서 소방관 등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 것은 판례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로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해서는 형의 감면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만, 민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지 않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1)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¹²⁾ 형벌권은 국가가 보유¹³⁾하는 반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피해자가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법률을 통해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 제도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책임 보험¹⁴⁾을 운영중이고, 경찰은 공무원 책임보험¹⁵⁾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찰 법률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보상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경찰관 개인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음.¹⁶⁾

해외의 경찰 책임 면책과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Saucier v. Katz(2001) 사건에서 경찰관이 전체적인 현장상황은 제대로 인식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물리력을 사

12) 대법원 1996년 2월 15일 선고 95다38677 판결

13) 신동운, 「형법총론」 제5판 761면, 2010

14) 공무원 책임보험은 정부 공통 사항으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이고, 운영에 국가 예산이 투입됨.

15)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법률보험은 경찰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에 따라 운영 중인데, 운영비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고, 경찰관들이 자조적으로 모은 금액이 사용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6) 언론 보도 중에는 경찰관 개인이 손해배상을 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사도 있음. 한겨레 신문 2023년 8월 9일자 기사, “범인 잡다 수억 물어야?...실제론 경찰관 개인배상 ‘0건’ ‘경찰이 수억배상 판결 8건 살펴보니’”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록 잘못 이해하여 다소 과잉 물리력을 사용함으로써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면책(qualified immunity) 사유에 해당,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경찰관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로 인한 과잉 물리력 사용 시 면책 가능성을 열어둠.¹⁷⁾ 다만, 미국은 경찰관의 면책특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여 이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었음.¹⁸⁾

경찰청은 현행법에 열거된 특정범죄 외에도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범죄는 다양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범죄 외에도 재난·재해 등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다양한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부담 등 심리적인 위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직무수행을 특정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법무부는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면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

17) 이훈, 정진성,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 기준 비교 연구”,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제77호(2019), 361면

본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적법성은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한 당시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18) YTN 2020년 6월 26일 보도, “미 하원 ‘목조르기·면책 제한’ 경찰개혁안 처리...상원 난망”
https://www.ytn.co.kr/_ln/0104_202006261727425398

KBS 뉴스 2021. 3. 27. 기사, “뉴욕, 경찰관 공무수행 중 면책특권 폐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148864>

뉴욕시의회 홈페이지 2021. 3. 25. 기사, “Council Votes To End Qualified Immunity and Seven Other Measures to Reform NYPD” (<https://council.nyc.gov/press/2021/03/25/2079/>)

감하지만, ① 당초 해당 면책규정은 경찰관의 일부 직무집행 부분에 대해서 형의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면책의 전제인 특정범죄의 제한을 전면 삭제하는 등 면책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위법행위 억제 및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미칠 영향 등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② 이러한 면책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형법」상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 일반원칙에 따른 면책이 가능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③ 민사상 책임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¹⁹⁾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법원행정처는 경찰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① 범죄의 제한이 없이 감면을 할 수 있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경찰권의 남용 우려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② 현행과 같은 「경찰관 직무집행」에 따른 형의 감면 조항이 신설된 지 3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이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사유 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③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현행법 표현은 「형법」상의 형의 감경 또는 면제사유²⁰⁾와 동일한 문언으로서 형의

19) 대법원은 1996년 2월 15일 선고한 95다38677 판결에서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20) 「형법」 제7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27조 단서, 제52조, 제90조, 제153조, 제157조 등

감면 사유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개정안과 같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문언은 ‘형사책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무죄판결), 형의 감면사유인지(유죄판결의 일종)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개정안은 위험 방지 조치 중 매우 긴급한 경우에 실시하는 억류·피난 조치를 긴급한 경우 실시하는 이동제한·대피 조치로 개정하고, 위험 상황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퇴거 및 접근금지 조치의 근거를 신설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 중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함에 따라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내용만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붙임]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7.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 중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에 관한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부분은 개정안 내용과 동일하게 의결하되, 개정안 중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제11조의5 사항은 관련 법률안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의5를 현행대로 수정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5의 제목 중 “민·형사상 책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사람”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으로, “그 손해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형”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

-----그 손
해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책임-----.

<삭 제>

<삭 제>

-----형-----.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

<u>죄, 「아동학대범</u> <u>죄의 처벌 등에</u> <u>관한 특례법」에</u> <u>따른 아동학대범</u> <u>죄</u>	<u>죄, 「아동학대</u> <u>범죄의 처벌 등</u> <u>에 관한 특례</u> <u>법」에 따른 아</u> <u>동학대범죄</u>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매우 긴급한”을 “긴급한”으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을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u>매우 긴급한</u>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u>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u> <u><신설></u> 3. (생략) ② ~ ④ (생략)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긴급한</u> ----- ----- ----- <u>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u> --- 3. <u>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